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 마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00호)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80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 마련	3

I. 제안경위

1. 오세회의원안(제2213500호)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0.

3. 회부연월일 : 2025. 10. 13.

2. 김한규의원안(제2214380호)

1. 발 의 자 : 김한규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9.

3. 회부연월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오세회의원안(제2213500호)

현행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의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도시계획 변경, 상권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 인정받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초의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2. 김한규의원안(제2214380호)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

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 마련

오세회의원안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미한 변경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 신설).

김한규의원안은 전통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변경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 신설).

현 행	오세회의원안	김한규의원안
<신 설>	제10조(시장의 경미한 변경 등) ① 제2조1호에 따라 인정한 시장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정한 전통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변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¹⁾ 전통시장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²⁾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이하 생략)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³⁾ 전통시장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변 상권의 변화나 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구역 조정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통시장의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인바,⁴⁾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⁵⁾⁶⁾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이하 생략)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전통시장 구역변경 시 인정요건 및 절차 알림”, 전통시장육성과-1445(2022.6.10.)

5) <관련 기사>

-뉴스핍, “김한규, 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 신속화 법안 발의”, 2025.11.19.자
(URL: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119000210>)

-헤드라인제주, “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 신속하게 처리한다”, 2025.11.19.자
(URL: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610>)

전통시장 인정 기준 및 절차

□ 전통시장의 정의 및 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정의)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곳

-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②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1/2 미만일 것
- ③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
- ④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 ⑤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전통시장의 인정 절차(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상인(회)	⇒	시장·군수·구청장
<사전 동의> ■(동의요건) 상인·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 ·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1/2이상 · 토지 소유자(토지면적)의 1/2이상 ·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	<신청서류> ■(제출) 전통시장 인정신청서 · 동의자의 서명·날인 명부 · 구역의 표시 도면 · 구역의 지번과 면적 ·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발급서류> ■(처리기간) 14일 ■(발급) 전통시장 인정서 ■(공고) 공보·신문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전통시장의 구역 변경(확대·축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시장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구역을 단위로 하는 전통시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가 마련되면, 인정 절차를 반복하여야 함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

- 6)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 시 상인회와 이해당사자 간 합의 요청에 의해 인정권자의 직권 현황조사를 통한 구역변경 승인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거나 구역 전체가 아닌 신규 인정구역만 추가로 인정 절차를 거치도록 전통시장 구역변경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인바, 먼저 구역변경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검토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김한규의원안은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인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점을 고려하여 조례 위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경미 여부를 판단할 기준, 예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